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32697, 2019나2032703(반소) 판결 [공사대금 및
장비대금 등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32697, 2019나2032703(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91059, 2018가합59106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원, 이×훈, 이♣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김@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91059(본소),

2018가합59106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8,220,443원 및 그중 65,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9.부터, 12,270,443원에 대하여는 2017.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220,443원 및 그중 65,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9.부터, 12,270,443원에 대하여는 2017.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사항 2째 줄(제4면 아래에서 10째 줄)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부분을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등의 비용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착오에 빠진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2)항 부분(제5면 본문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7면 위에서 3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 중 가맹비 1,000만 원 및 2017. 7.분 로열티 24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견적서 및 이 사건 최종견적서의 가맹비 항목에 연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2017. 7. 8.부터 2017. 8. 2.경까지 약 1달간 F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최종견적서를 받은 후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서면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가맹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점(원고는, 피고가 처인 H 등의 명의로 가맹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가맹점 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②, ③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가맹 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계약 명의자 문제만을 이유로 가맹점 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피고 사이에 로열티 금액을 월 매출액의 3%로 할 것인지 또는 월 240만 원의 고정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를 중개한 I에게 매월 고정 로열티 2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조율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는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에 로열티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피고 사이에 가맹점 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가맹비 및 로열티 금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청구 중 직원 교육비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F점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3)가)항 7째 줄(제7면 위에서 12째 줄)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항 9째 줄(제7면 위에서 14째 줄) "송달로서"를 "송달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3)나)(2)항 부분(제9면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10면 위에서 5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나아가 제2의 나.2)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피고 사이에 가맹비 및 로열티 금액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의 가맹본부에 가입하여 F점을 운영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피고 사이에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종 장비, 천정형 냉난방기, 파견 직원, 제품,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약 1달간 F점 영업을 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공급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가 강조 ·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기망 또는 원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E 가맹본부를 법인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할 것이며, 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할 계획도 잡혀 있다. 연예인들 또한 계약 대기 중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아 E가 우수한 품질을 갖춘 가맹본부로 그 사업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착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E'라는 상호로 가맹사업 등록(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하지 아니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위 상호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는 등 피고가 'E'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실비만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거나 '유명 빵집에서 최근 개발한 빵을 제작할 실력이 있는 경력을 갖춘 제빵사를 공급하여 주고 필요한 교육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아 공사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실비 지불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양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기자재 및 인력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나. 판단

1) E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본부의 법인 전환, 제품의 백화점 납품 내지 연예인의 가맹점 계약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 가맹사업의 전망을 다소 과장하여 홍보한 것을 넘어 상거래의 관행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E 가맹점의 전국적 확대 계획, 가맹본부의 법인 전환 또는 연예인의 가맹사업 가입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3.

27. 주식회사 K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K 본점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한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E'라는 상호로 가맹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J

특허청에 'E'라는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16. 8. 1.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4, 30, 31,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이 피고가

F점을 운영하는 데 객관적으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2017. 7. 8.부터 2017. 8. 2.경까지 약 1달간 F점을 운영하는 동안 위와

같은 등록 미비에 따른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전국의 E 매장이 5개가량(반포점, K 본점점, L점, 일산점,

판교점, 그 중 반포점은 2017. 3.경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하고, L점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7. 5. 24.경 영업을 시작하였다)이고 그 중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은 2개(일산점, 판교점)에 불과하여, E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가맹사업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는 당시 원고가 E의 가맹점 수가 6개(피고 운영 예정이었던 F점을

포함할 경우 7개)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는 M 'E'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다) 또한, 갑 제1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최초에는 E가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차임면제 기간,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E 가맹점 영업을 선택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8.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과다를 취소사유로 삼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E 가맹사업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가맹사업의 확장 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인력 제공 등에 관하여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2억 4,970만 원인 반면 실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57,00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공사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계약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받고 스스로 그 대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원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억 4,97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신의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내역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가액 및 재료비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견적서에 적시한 범위를 넘어 공사원가 및 이윤 등을 모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F점에 파견한 제빵사들이 상당한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양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실비에 준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승규 판사 오영상 판사 이재혁